##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94 발의연월일: 2021. 6. 4.

발 의 자:최형두·강기윤·권명호

김성원 · 김영식 · 박성민

엄태영 · 이종성 · 정운천

태영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·물적 피해의 감소, 안전기준의 개발,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,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

또한 소방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,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'특별자치시장'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##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"광역시장·도지사"를 "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	제5조(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
·시행 등) ① ~ ③ (생 략)	·시행 등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	4
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	
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	
관의 장과 특별시장· <u>광역시장</u>	<u>광</u> 역시장 •
<u>·도지사</u> 또는 특별자치도지사	특별자치시장·도지사
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	
게 통보하여야 한다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